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05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어기구·윤준병·허성무
이연희·소병훈·정태호
김동아·오세희·김병주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공간,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농촌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농업·농촌디자인”이란 농업·농촌의 공간,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농업인,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농촌마을디자인·농업용시설디자인·도시농업공간디자인·농업기계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14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농촌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농업·농촌디자인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 <u>농업·농촌디자인</u> ”이란 <u>농업·농촌의 공간,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농업인,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농촌마을디자인·농업용시설디자인·도시농업공간디자인·농업기계디자인 등을 포함한다.</u>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 ⑦ (생 략) <u><신 설></u>	<u>7. 농업·농촌디자인 개발촉진</u> <u>및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u> <u>사항</u> ③ ~ ⑦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2(농업·농촌디자인 지</u> <u>원시책의 수립·추진 등)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u> <u>농촌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보</u> <u>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u> <u>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u> <u>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u> <u>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u> <u>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u> <u>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u>
--	---